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 11. 25 선고 2021가단1255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1. 10. 28.

판 결 선 고 2021. 11. 25.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2016. 7. 24.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등기계 2021. 1. 13. 접수 제64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은 C에 대하여 신용카드 이용대금 및 대출금 채권 6,000,000원을 가지고 있었고, E 주식회사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1. 6. 15. E 주식회사로부터 C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하면서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C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나.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433523호로 C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C는 원고에게 22,435,590원 및 그 중 6,000,000원에 대하여 2016.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망 F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였고, F의 상속인으로 피고 및 C를 포함하여 자녀 6명이 있다. F이 사망한 후 피고는 2021. 1. 1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7. 24. 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이라 한다)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 채권이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서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대신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C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원고에 대하여 위 양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이 법원의 통영세무서 및 통영시청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C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통영시 G 임야 149㎡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토지는 소액징수 면제 대상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아 그 가액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 이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는바, C는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부담한 상태에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 지분(1/6)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에게 이를 단독으로 상속하게 하여 무자력 상태에 빠졌거나 그 상태가 심화되었는바, 이와 같은 분할협의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C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C는 이로 인하여 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 중 C의 상속분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한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위 지분에 관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혜승

별지